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제안자 : 교육위원장

수정이유

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조항이 교육환경평가와 관련된 것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의 조항을 교육환경평가 관련 조문 후단에 함께 규정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작성”을 “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학생 수 증가 등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 제7조의2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① 교육환경평가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사”라 한다)는 그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된 내용과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현행과 같음)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 ① ----- ----- ----- ----- ----- ----- ----- ----- ----- -----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학생 수 증가 등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

② ~ ⑤ (생 략) <u><신 설></u>	<u>제7조의2(변경사항</u> <u>통보) 사업시행자</u> <u>는 사업계획의 내</u> <u>용 중 학생 수 증</u> <u>가 등 해당 지역의</u> <u>교육환경에 중대한</u> <u>영향을 미칠 수 있</u> <u>는 사항으로서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u> <u>사항을 변경하는</u> <u>경우에는 그 사실</u> <u>을 즉시 교육감에</u> <u>게 통보하여야 한</u> <u>다.</u>	<u>육감에게 통보하여</u> <u>야 한다.</u> ② ~ ⑤ (현행과 같음) <u><삭 제></u>
--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332
----------	------

발의연월일 : 2024. 12. 10.

발 의 자 : 진선미 · 김한규 · 모경중
김우영 · 이용우 · 임광현
김영환 · 김준혁 · 강경숙
위성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개발사업시행자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인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런데 최근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은 후 해당 지역의 학령 인구 증가를 가져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교육감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교육감이 예상치 못한 학생 수 증가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학생 수 증가 등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감이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 2 신설).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가. 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조항이 교육환경평가와 관련된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기존 교육환경평가 관련 조문 후단에 함께 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작성”을 “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학생 수 증가 등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u>작성</u>) ①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사”라 한다)는 그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된 내용과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u>작성 등</u>) ① ----- ----- ----- ----- ----- ----- .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학생 수 증가 등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